



제 433회 국회 (임 시 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의 사업내용 추가〉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855호)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정 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의 사업내용 추가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만회의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6. 1. 5.
3. 회 부 일 : 2026. 1.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은 주민이 사업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의 성공 추진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주민을 포함한 지역 공동체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역량강화가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 법령에서는 이를 담당할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현장에서 지원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중 시·군 단위로 설치되어 주민들과 현장에서 접점이 가장 많은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의 업무 범위에 지역 공동체 역량강화를 명시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장·군수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실행력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 등에 광역시의 자치구를 포함함으로써, 보다 많은 농촌지역에서 농촌 특화지구 지정 정책 등을 통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을 촉

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균형 있는 농촌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조 등).

Ⅲ. 검토의견

1.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의 사업내용 추가

개정안은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이하 “기초지원기관”이라 함)의 사업내용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 공동체 역량강화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5조).

현 행	개 정 안
제35조(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①·② (생 략)	제35조(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이하 “기초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 ----- ----- -----.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현황 및 주요 지표 조사·관리 지원 2. 해당 지역의 농촌공간 정책 관련 조사·연구 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수립 지원 4. 사업계획 수립 지원 5. 주민협정 체결 및 주민협의회 구성 지원 6. 주민제안 지원 7.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점검·평가 지원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u>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 공동체 역량강화</u>
8. 그 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지원에 관한 업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업무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¹⁾에 관련한 시책 발굴, 조사·연구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 “광역”, “기초” 단위별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임(지정현황 [참고자료] 참조).

[농촌공간 정책지원기관 개요]

구분	지정권자	주요 사업
농촌공간 <u>중앙</u> 지원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농촌공간정책의 발전을 위한 시책 발굴 ○ 농촌공간정책 관련 조사·연구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 지원 등
농촌공간 <u>광역</u> 지원기관	시·도지사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현황 및 주요 지표 조사·관리 지원 ○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 관리 및 지원 ○ 지역협의체의 구축·운영 등의 지원 등
농촌공간 <u>기초</u> 지원기관	시장·군수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현황 및 주요 지표 조사·관리 지원 ○ 해당 지역의 농촌공간 정책 관련 조사·연구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수립 지원 등

*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 현황은 참고자료1 참조

개정안은 기초지원기관이 해당 지역주민에게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이 교통·문화·교육·복지 등 농촌주민의 생활 전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사업참여를 활성화하고 정책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런데,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은 농촌공간을 계획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는 ‘재구조화’와, 교통·교육·문화·복지 등 농촌생활서비스를 확충하는 ‘재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마을 리모델링, 시설확충과 같은 물리적 정비뿐만 아니라, 지역특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축제 개최 등의 비물리적 활동을 포괄하는 내용임.

법률」 제8조²⁾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촌주민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현행 농촌 관련 법률 체계 하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주민의 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기초지원기관에 대해 특별히 지역 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지역 공동체 역량 강화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에 중점을 둔다는 점이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공동체 역량강화”가 의미하는 바가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므로, “교육·훈련 및 상담 등의 공동체 역량강화 지원”과 같은 방식으로 구체화하여 기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임.

한편, 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

2)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농촌 주민 등의 역량 강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 주민,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훈련·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상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란 농촌 주민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비스를 말한다.

가. 일자리·소득 관련 서비스

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공공서비스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고용·주거·교통·교육·보건의료·복지·환경·문화·정보통신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

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³⁾

문 의 처
02)6788-5417

3)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비용추계서, ②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29)

참고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지정 현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총괄 1, 특화 3)

구 분	기관명
총괄	한국농어촌공사
특화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9개도)

시·도	기관명
경기도	(재)경기도농수산물진흥원
강원특별자치도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충청북도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충청남도	(재)충남경제진흥원
전북특별자치도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전라남도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경상북도	영남대학교
경상남도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40개 시·군)

시·도	시·군	기관명
경기 (1)	이천	농촌마을지원센터
강원 (2)	횡성	횡성군지역재생지원센터
	영월	영월군농촌활성화지원센터

충북 (7)	청주	청주시활성화재단
	제천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영동	지역활성화센터
	증평	지역활성화센터
	괴산	지역활성화센터
	음성	농촌활력지원센터
	단양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 (8)	천안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공주	활력지원센터
	보령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당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금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부여	마을만들기지원센터
	홍성	홍성지역협력네트워크
	예산	행복마을지원센터
전북 (4)	남원	남원시 농촌종합지원센터
	진안	진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무주	무주군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순창	순창군 농촌종합지원센터
전남 (3)	나주	농촌활성화지원센터
	화순	화순군농촌활성화 통합센터
	함평	함평군농촌활성화지원센터
경북 (7)	포항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상주	상주시지역개발지원센터
	문경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영양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
	성주	성주군농촌개발지원센터
	예천	예천군농촌활력지원센터
	울진	통합지원센터
경남 (8)	김해	김해시농촌공동체활성화협의회
	양산	양산시도시재생지원센터
	의령	의령군농촌활성화지원센터
	창녕	창녕군농촌협약지원센터
	하동	하동군농촌협약지원센터
	산청	산청군농촌협약지원센터
	함양	함양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합천	합천군 지역개발지원센터